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경만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545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09일

발 의 자:경만선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춘례, 김태호, 김화숙,

문병훈, 신정호, 안광석, 오한아, 이종환, 최영주
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도 이를 적용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 (안 제12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(생 | 제12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(현 |
| 략) | 행과 같음) |
|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| ② |
|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| |
| 종료된 후 <u>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 | <u>2개월</u> |
| 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